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정의호 소유물건(2024타경108231)

의 뢰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희상

감정평가서번호: NE02024-051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오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이 준 석 (인)

감정평가액	구억구천만원정(₩990,000,000.-)			
의 뢰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희상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8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정의호 (2024타경108231)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4.05.20	2024.05.16 ~ 2024.05.20	2024.05.2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1세대 하	- 여	990,000,000 백
	합 계					₩99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51	256-5 한신.동 성아파트 제5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4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지층	 1,045.68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87.36 965.44			
1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6층 제608호 1 소유권대지권	32,046.4 112.24 53.56 32,046.4x--- 32,046	112.24 53.56	990,000,000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비준가격 (공용면적 포함) 배분내역 693,000,000 297,000,000
	합 계						₩990,000,000.-	
			이 하		여	백		

NEO2024-0513-0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소재 “서울혜성여자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1세대)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나. 해당사항 없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4.05.20을 기준시점으로 결정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건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4.05.16 ~ 2024.05.20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위치, 구조, 면적 및 이용 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 등에 의하였음.

나.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귀 명령 및 평가목적에 의거하여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음.

다. 본건은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내부조사가 불가하여 호실 표기를 기준한 외부관찰, 주위 탐문 및 건축물 현황도 등에 의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을 파악 하였는바, 실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 절차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 관행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 향별 ·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을 비교·검토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2)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 평가대상 물건의 특성 및 구분건물의 임료의 지행성에 따른 적정 임료 포착이 어려워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하고, 최초 신축 시 토지매입비용, 건축비용 등 비용자료 확보가 어려워 원가법의 적용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사례 및 실거래사례 등의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산출

1. 대상 물건 개요

기호	소재지	건물명	용도	구조	규모 (지상/지하)	사용승인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한신,동성아파트 제5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14/1	1993.03.03

기호	위생	급탕	난방	승강기	소방	비고
1	○	○	○	○	○	-

기호	동 층 호	대지권(㎡)	전유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유면적 비율(%)
1	제5동 제6층 제608호	53.56	112.24	42.63	154.87	72.47

※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은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가격참고 자료

1)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거래 사례1	하** 2**-*	한****** 제*동 제*층 제4**호	112.24	1,000,000,000	8,909,479	2023.11.15 1993.03.03
거래 사례2	하** 2**-*	삼****** 제*동 제1*층 제1***호	134.19	1,097,000,000	8,174,975	2023.07.24 1993.06.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	전유면적 (㎡)	평가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평가 목적
평가 사례1	하** 3**	학******* 제1**동 제1*층 제1***호	113.51	1,000,000,000	8,809,796	2024.04.30 1999.12.09	법원경매
평가 사례2	하** 2**	현**** 제1**동 제*층 제9**호	84.95	910,000,000	10,712,184	2024.01.08 1988.09.29	법원경매

3) 평가대상 지역의 경매통계분석

[출처 : 지지옥션]

소재지	물건용도	대상기간	낙찰건수	낙찰건율	평균 낙찰가율	비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2023년 05월 ~2024년 04월	82	31.42%	77.24%	최근 1년

나. 사례 선정

인근지역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물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층 호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거래 사례1	하** 2**-*	한****** 제*동 제*층 제4**호	112.24	1,000,000,000	8,909,479	2023.11.15 1993.03.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로 정상화 하는 작업임.

기호	사례기호	사정보정	비고
1	거래사례1	1.000	비교거래사례는 거래 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므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4.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노원구)”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본건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 (2024년 04월)	88.3
사례의 매매시점 매매가격지수 (2023년 10월)	89.2
시점수정치 (본건지수/사례지수)	88.3 / 89.2 ≒ 0.9899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개별요인 비교치

기호	사례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소계
1	거래사례1	1.00	1.00	1.00	1.00	1.000
비 고	본건은 동일단지에 소재하여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등에서 동일하며, 호별요인 등에서 대체로 유사하여 전반적으로 거래사례와 유사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전유면적당 단가(원/㎡)	전유면적 (㎡)	산정가액 (원)	감정평가액 (원)
1	8,909,479	1.000	0.98991	1.000	8,819,582	112.24	989,909,884	99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1.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평가대상 물건과 유사한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동종·유사 물건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경매통계 및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동 층 호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1	제5동 제6층 제608호	112.24	990,000,000	8,820,38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소재 "서울혜성여자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하계역(지하철 7호선)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제14층 내 제6층 제608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는 동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의 한글비석로와 남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노원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반드시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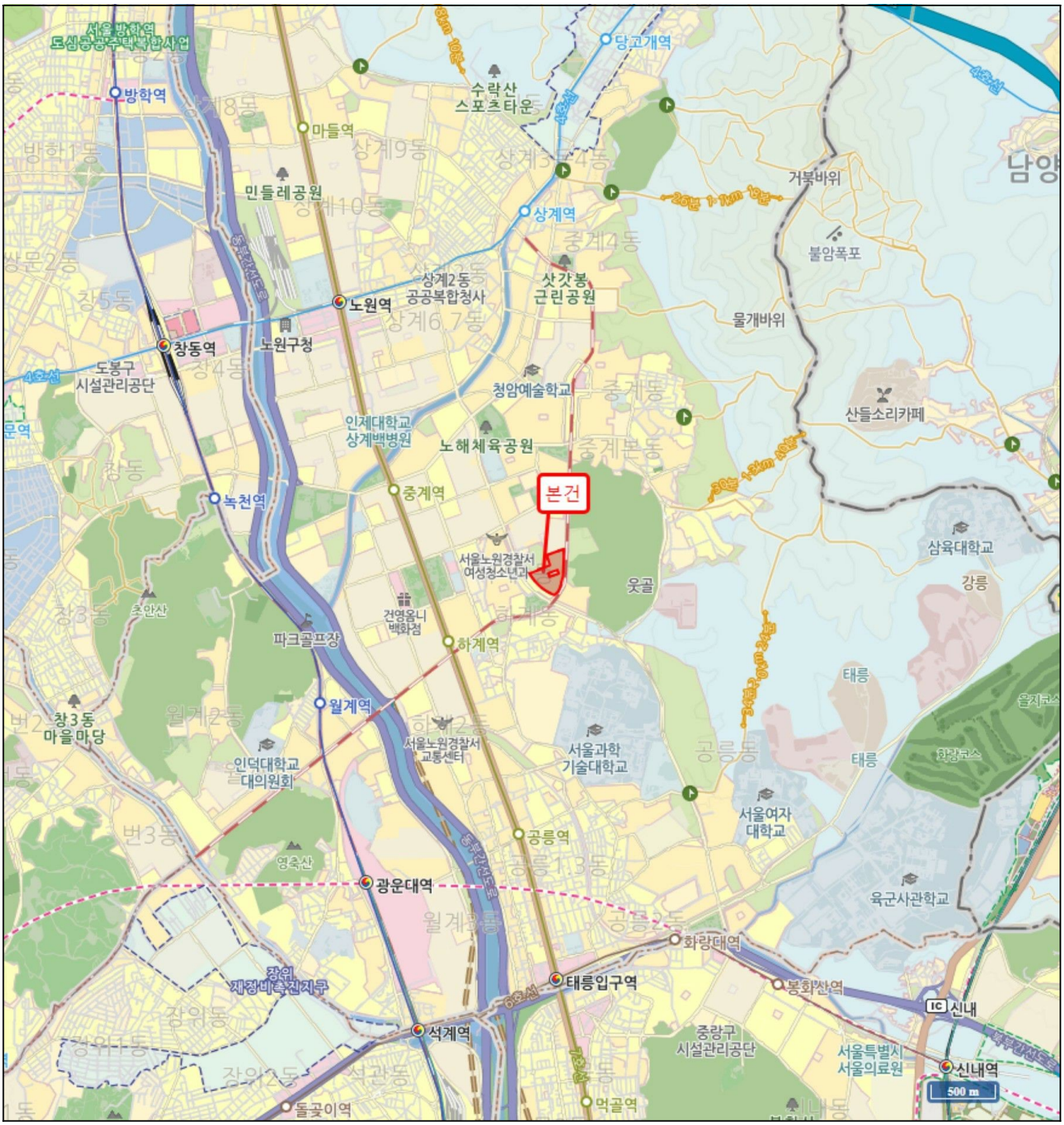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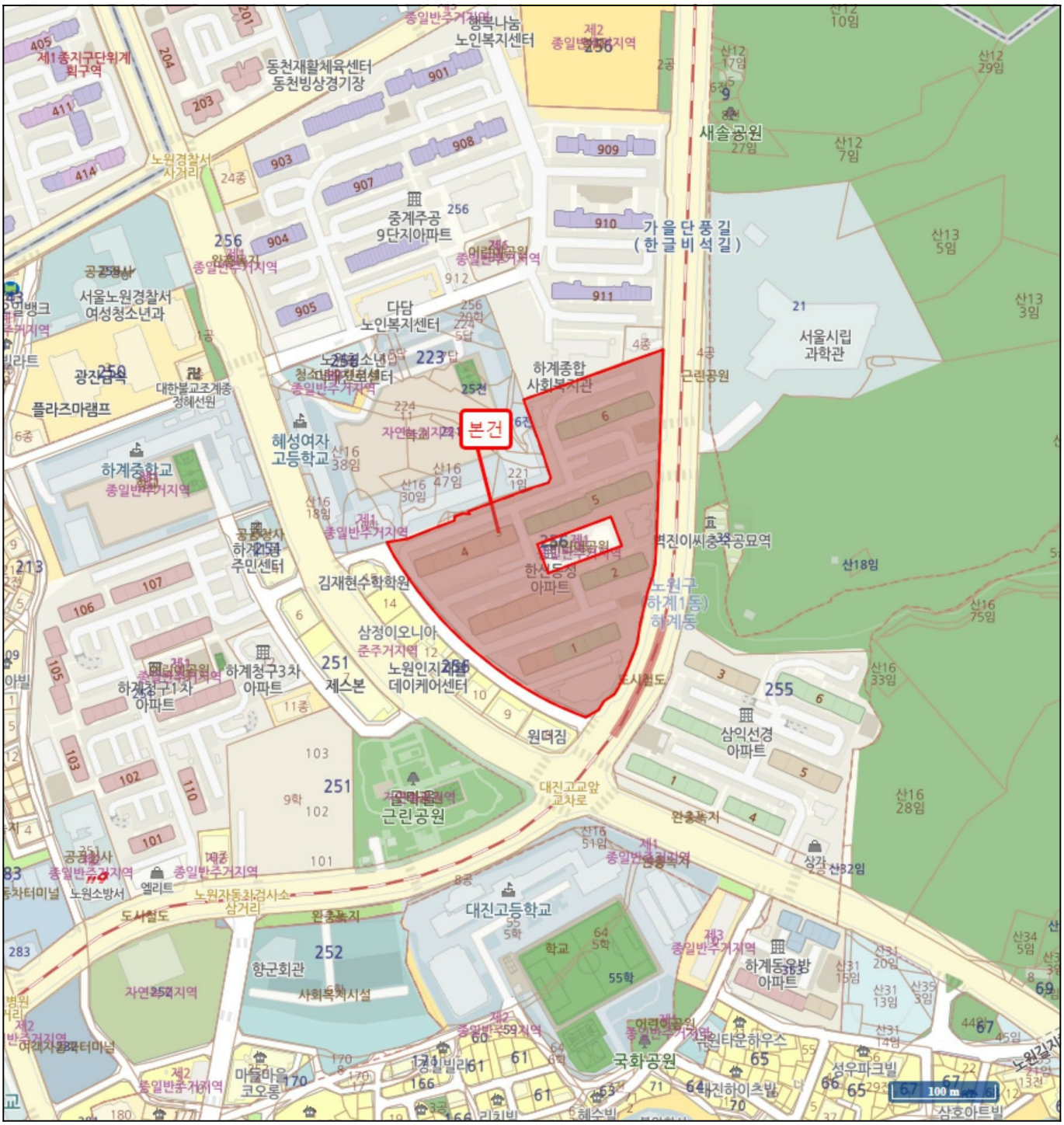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한신.동성아파트 제5동 제6층 제608호



위 치 도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한신.동성아파트 제5동 제6층 제608호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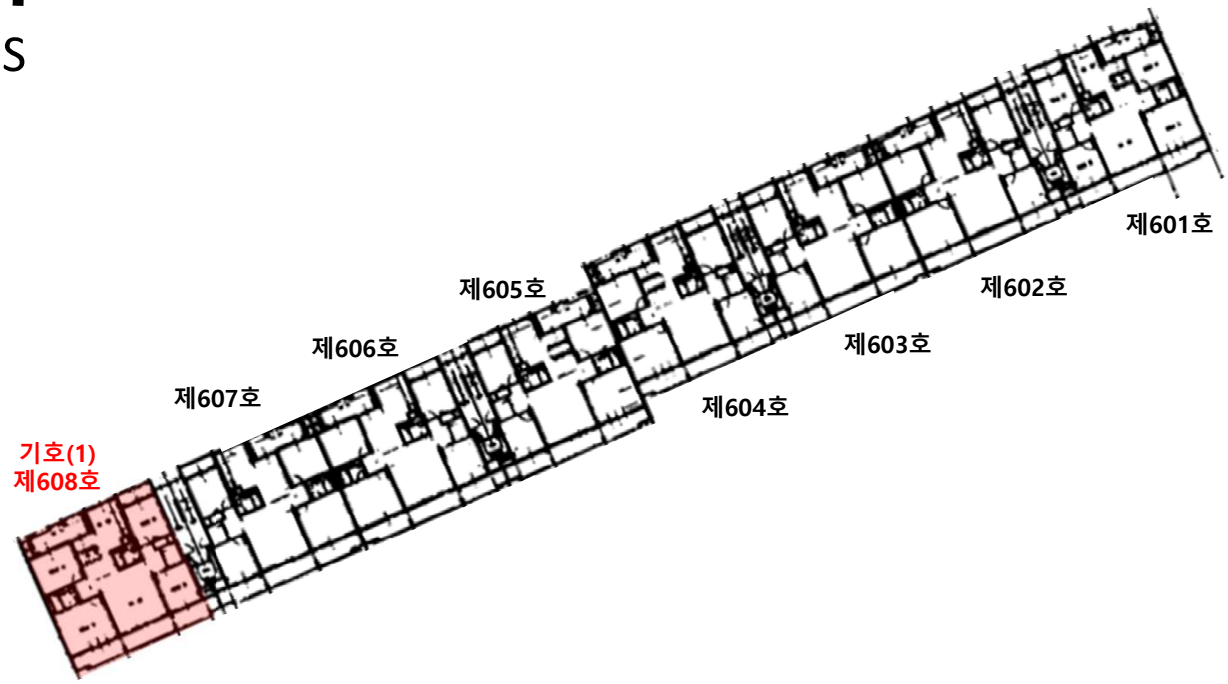
N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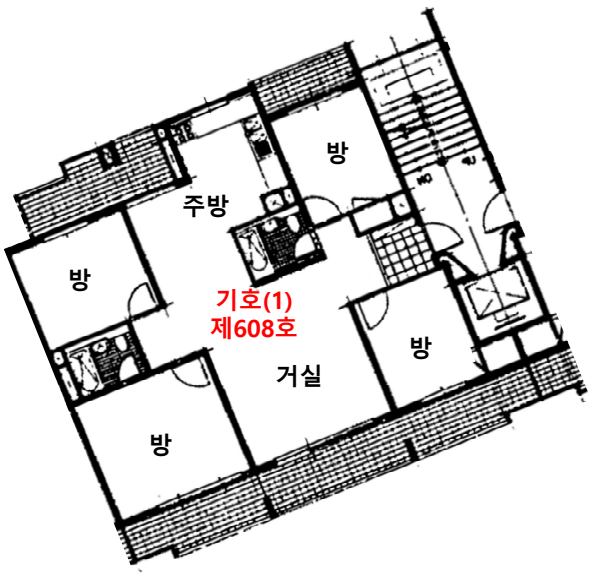
S

NO SCALE

제6층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본 내부구조도는 점유자의 폐문 부재로 인하여 내부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현황도, 유사 평가사례, 외부 관찰 및 탐문 등에 의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참여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사 진 용 지



본건단지 전경



본건단지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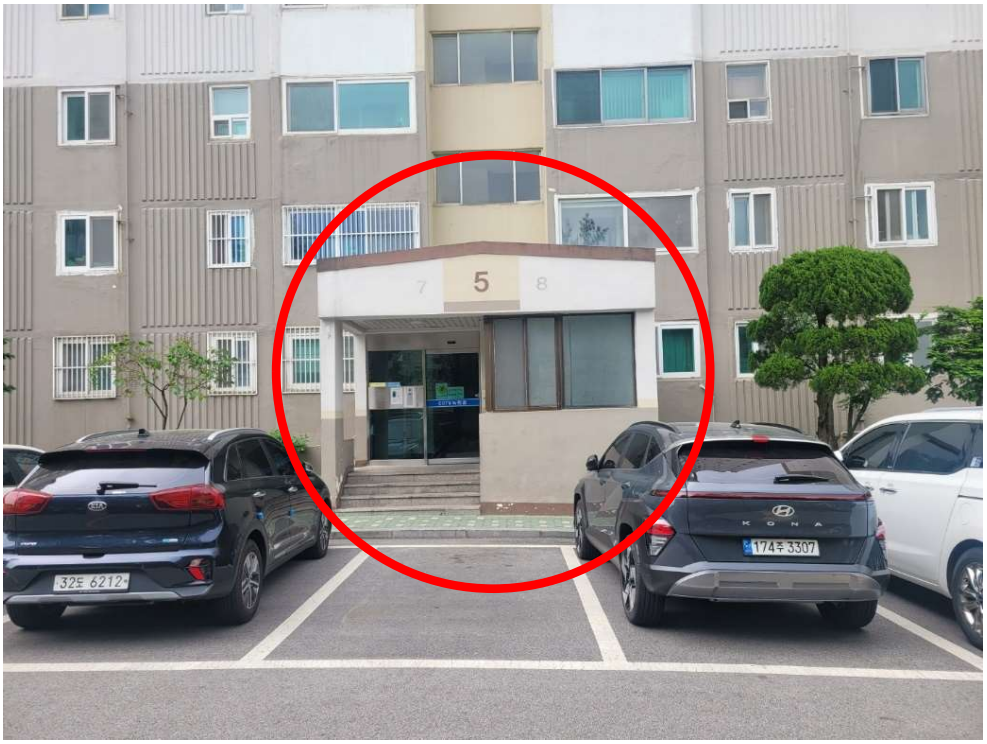


본건 전경



본건단지 내부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1층 출입문



본건 현관문